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24

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정일영·김문수·임광현

이훈기 • 권향엽 • 김병주

박지원 • 김 유 • 황명선

정진욱 • 이병진 • 이재강

박홍근 • 문금주 • 안태준

강준현 • 조인철 • 이광희

박용갑 의원(19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이동수 단,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한 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음. 특히 인공지능, 미래형 운송수단,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소멸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,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및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바이오의약품"을 "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, 미래형 운송수단(친환경 선박을 포함한다), 양자컴퓨터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(연구ㆍ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) ① -----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(이하 "연구 · 인력개발비"라 한 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.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연구·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 이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, 미래 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 형 운송수단(친환경 선박을

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(이하 "국가전략기술"이라 한다)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"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"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계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

가.·나. (생략) 3. (생략) ② ~ ⑥ (생략)

| 포함한다), 양자컴퓨터   |
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
| 가.ㆍ나. (현행과 같음) |
| 3. (현행과 같음)    |
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|